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를 규정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: 5명 이상 10명 이하
2.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: 11명 이상 15명 이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범위)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”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. ② <신설>	제21조의2(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범위)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”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.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u>1.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: 5명 이상 10명 이하</u> <u>2.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: 11명 이상 15명 이하</u>